

신기술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제도설명회

- 기술인증제도 소개 -

2011.4.

1

건설
신기술

2

교통
신기술

3

교통카드
인증

4

녹색기술
인증



건설신기술 소개

1. 제도 도입 배경 및 지정대상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3. 심사기준
4. 심사절차
5. 사후관리체계
6. 신기술의 혜택
7. 2010년 신기술 주요 변경사항



1.제도 도입배경 및 지정대상

| 1. 제도 도입 배경 및 지정대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심사기준 | 4. 심사절차 | 5. 사후관리체계 | 6. 신기술의 혜택 | 7. 주요 변경사항

도입 배경

- 80년대 후반 국내 건설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7%에 불과
-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의 자율적 기술개발 유도 제도 필요

지정 및 연장대상

지정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개량한 건설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어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기술

연장 대상

- 신기술로 지정 받은 후 현장 활용실적이 있는 신기술로 현장활용으로 품질이 검증되고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수준이 우수한 기술

1

건설신기술소개

2. 근거 법령 및 관련기관

| 1. 제도 도입 배경 및 지정대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심사기준 | 4. 심사절차 | 5. 사후관리체계 | 6. 신기술의 혜택 | 7. 주요 변경사항 |

근거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 건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 건설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부 훈령)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부 훈령)
- 건설신기술 업무 매뉴얼(국토부)

국토해양부

건설신기술제도 운영관리 총괄
건설신기술 법규개정 및 업무제도 개선 등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 심사위원회 운영
건설신기술 홍보 및 사후관리

관련기관

건설신기술협회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1

건설신기술소개

3.심사기준

| 1. 제도 도입 배경 및 지정대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심사기준 | 4. 심사절차 | 5. 사후관리체계 | 6. 신기술의 혜택 | 7. 주요 변경사항 |

● 심사 기준

1차 심사위원회

- 신규성(50점) : 최초 개발 또는 개량된 기술
- 진보성(30점) :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향상
- 시장성(20점) : 활용가능성, 선호도

2차 심사위원회

-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등의 우수성
- 구조안정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 구조적 안정성
- 보급성 : 기술적 특성, 공익성 등의 우수성
- 경제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반의 비용절감효과의 우수성

● 연장 기준

2차 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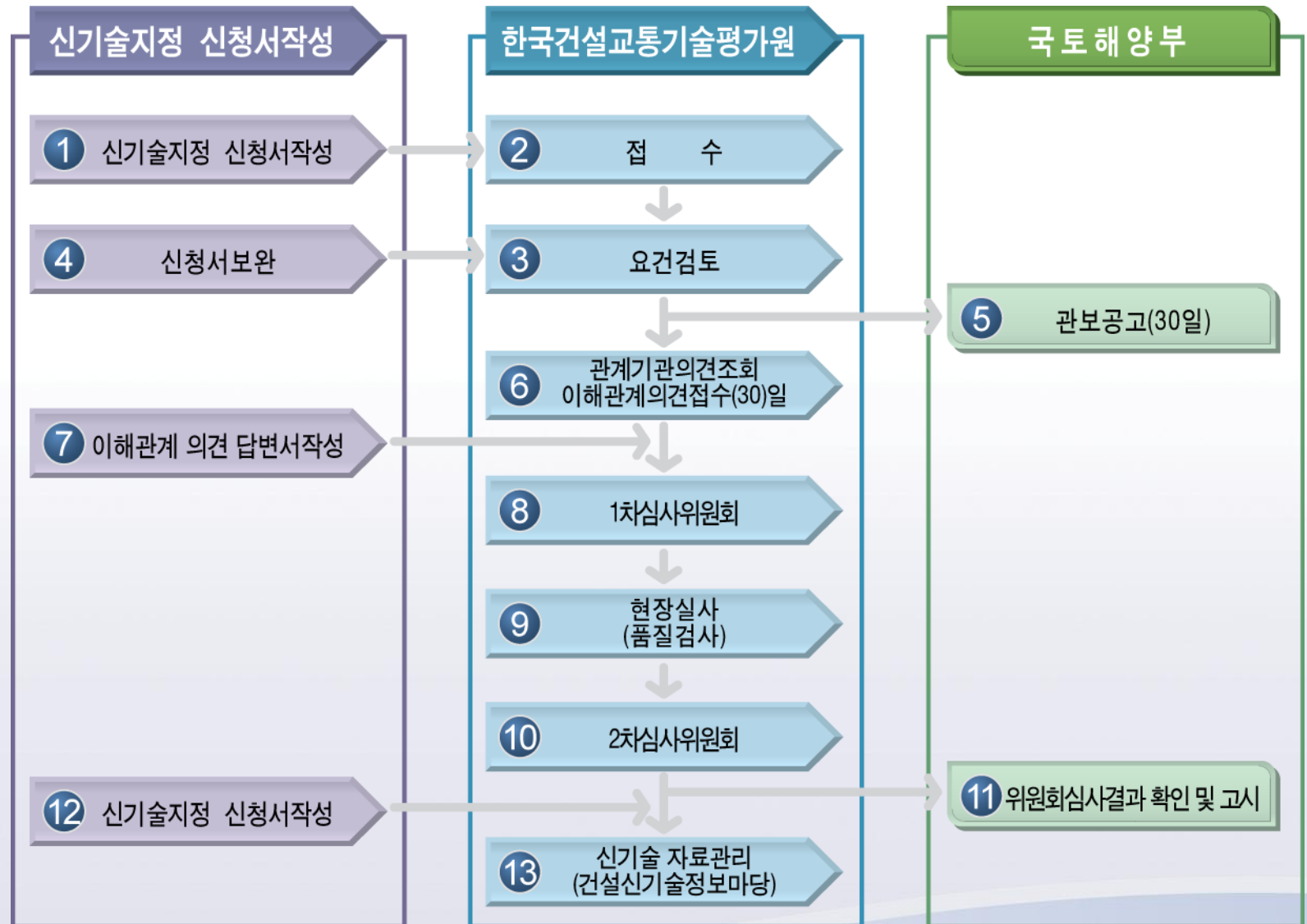
- 기술 우수성(55점) :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 활용실적(45점) :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활용실적 금액, 건수
- 가 점(10점) : 발주청 사후평가결과, 전시회, 박람회 참여 실적

1

건설신기술소개

4. 심사절차

| 1. 제도 도입 배경 및 지정대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심사기준 | 4. **심사절차** | 5. 사후관리체계 | 6. 신기술의 혜택 | 7. 주요 변경사항 |



5. 사후관리 체계

| 1. 제도 도입 배경 및 지정대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심사기준 | 4. 심사절차 | 5. 사후관리체계 | 6. 신기술의 혜택 | 7. 주요 변경사항 |



6.신기술의 혜택

| 1. 제도 도입 배경 및 지정대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심사기준 | 4. 심사절차 | 5. 사후관리체계 | 6. 신기술의 혜택 | 7. 주요 변경사항 |

관계법규에 의한 신기술의 혜택

건설기술관리법령

- 기술사용료 청구
- 우선 사용 권고
- 설계반영 의무
- 금융 지원
- 보호기간 부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 수의계약 가능
- 기술개발보상제도

기타(고시, 예규)

- PQ점수 부여
- (신기술보유자, 신기술
- 사용자, 설계자)
- 설계, 감리, 건설사업자 등
- 용역업자 PQ 점수 부여

1

건설신기술소개



7. '10년 신기술 주요 변경사항(1)

| 1. 제도 도입 배경 및 지정대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심사기준 | 4. 심사절차 | 5. 사후관리체계 | 6. 신기술의 혜택 | 7. 주요 변경사항 |

::신청자격 범위 변경

- >> 최종 특허권리권자
- >> 특허권리를 양수받은 제3자에게 신기술 신청 허용
 - 실용화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개발한 우수기술 발굴 및 활용

::양도 · 양수 제한적 허용

- >> 개인 개발자가 법인화 할 경우
- >> 부도 · 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1

건설신기술소개



7. '10년 신기술 주요 변경사항(2)

| 1. 제도 도입 배경 및 지정대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심사기준 | 4. 심사절차 | 5. 사후관리체계 | 6. 신기술의 혜택 | 7. 주요 변경사항 |

::보호기간 연장

>>최초 신기술 보호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10.12.13)

::사후평가 실효성강화

>>사후평가 근거를 국토해양부 훈령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격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10.12.13)

::보호기간 연장 평가 개선

>>활용실적 누락, 미제출의 경우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단축 조정

>>신기술을 개선 보완한 경우 보호기간연장 심사시 명칭, 범위 조정

-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0.12.23)

1

건설신기술소개



건설신기술 운영현황

1. 신청 및 지정현황
2. 활용실적



1. 신청 및 지정현황 (2010년 12월 기준)

| 1. 신청 및 지정현황 | 2. 활용 실적 |

연도별 신청 및 지정현황

건 수

연도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계
신청	939	58	61	43	61	54	68	47	50	1,381
지정	357	45	41	37	34	33	19	30	21	617

기술분야별 현황

건 수

분야	토목	상하수도	도로 / 철도	토질	건축	기타	합계
지정건수	131	111	91	91	120	73	617
비율(%)	21.2	18.0	14.8	14.8	19.4	11.8	100

개발 주체별 현황

건 수

개발 주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인	중·소기업 +연구소	개인	기타	합계
지정건수	59	375	87	34	10	40	12	617
비율(%)	9.6	60.8	14.1	5.5	1.6	6.5	1.9	100





2. 활용실적

| 1. 신청 및 지정현황 | 2. 활용 실적 |

연도별 활용실적('03~'09년)

단위:건, 억원

연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현장적용횟수	3,692	2,878	2,475	2,983	3,304	3,078	2,693
활용공사비	3,506	3,635	3,719	4,440	5,227	5,112	6,450

발주기관별 활용현황('09년)

단위:건, 억원

기관유형	공공부문					민간 부문	계
	투자기관	지자체	중앙정부	교육기관	소계		
활용건수	513	949	367	298	2,127	566	2,693
활용공사비 (비율)	2,040 (31.7%)	1,820 (28.3%)	901 (14%)	201 (3.1%)	4,962 (76.2%)	1,488 (22.9%)	6,450 (100)

1

건설신기술소개



교통신기술 소개

1. 개요
2. 지정대상
3. 신청자격
4. 처리절차
5. 지정혜택
6. 지정현황

1. 개 요

| 1. 개 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정 의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개량한 교통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보급·활용성 등이 인정되어 보급이 필요한 교통기술

도입 배경

- 국내 교통기술 수준은 선진국 기술대비 약 70%로 교통기술의 수준향상이 절실히 필요

목 적

- 민간인의 교통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교통기술의 수준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1. 개요

| 1. 개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 관련 법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03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6조~제101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2조~제47조
-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고시(2010년 4월)

● 지정 대상

- **교통수단**: 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및 선박
- **교통시설**: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시설
- **운영 및 관리**: 교통수단 및 시설의 운영 및 관리

1. 개요

| 1. 개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 심사 기준

- **신규성** : 최초 개발 또는 개량한 기술로 기존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 **안전성** : 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의 사고, 재해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 **보급·활용성** :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활용이 필요한 기술

● 연장 기준

- 초기 투자비용 규모, 생산공정의 복잡 정도
- 법·제도 정비 필요 여부 등

2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소개

1. 개요

| 1. 개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 건설 / 교통신기술 비교

구분	교통기술	건설기술
핵심	교통시설물의 기능, 성능 등의 향상으로 안전성이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교통시설물의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시공이나 공법 관련 기술
예시	-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제작기술 - 교통수단과의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기술(바이모달 트램 등) - 이용자의 시인성이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도로표지, 신호제어기) - 가드레일, 철도 분기기 등 소재나 구조물의 제작 기술	-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교통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작업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 도로표지, 및 분기기 등의 설치 기술



2. 지정대상

| 1. 개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 교통수단

구분	지정대상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대중교통수단(준대중교통수단, 신대중교통수단 포함), 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차량, 첨단지능형차량, 수륙양용교통수단, 수중교통수단, 기타 신교통 수단, 특수자동차 등
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중량), 도시철도차량(경량), 도시철도차량(소형), 일반철도차량(동력차), 일반철도차량(객차), 일반철도차량(화차), 신궤도교통수단, 특수차량, 자기부상차량, Combi-Road, Double stack train, 전기·디젤겸용 다목적 기관차(Hybrid형 기관차), 전기·축전지 겸용 기관차, Super-Rail Cargo, Cargo-Sprinter, 발전차 등
항공기	사업용 항공기, 개인용 항공기, 특수목적 항공기, 실험용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
선박	여객선, 화객선,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살물선, 광석운반선, 목재운반선, 철운반선, 냉장화물선, 자동차운반선, 원유운반선, 액화가스운반선, 어선, 바지선, 예인선, 위그선, 초고속선, 초대형선 등

2. 지정대상

| 1. 개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 교통시설

구분	지정대상
도로시설	교차로(신호교차로, 비신호교차로), 도로표지, 주차장, 노면표시, 안전표지, 주차시설, 도로시설(조명, 지주, 반사경,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Crash cushion), 기타도로구조물, 보행자 보호시설, 터미널,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화물취급장, 유통단지, 복합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도로 물류시설 등
철도시설	궤도, 건널목, 차량기지, 부대시설, 여객터미널, 선로구조물(터널, 교량, 토공시설, 분기기 등), 선로보수기지, 역시설,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사무소, 기지), 전철전력시설, 송·변전시설, 신호제어시설, 정보통신시설, 비상대피설비, 철도물류시설 등
공항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항행안전시설, 통신관제시설, 하역보관시설, 부대지원시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 공항보안시설, 공항 물류시설 등
항만시설	컨테이너부두, 항만보세창고, 냉장·냉동창고, 건하물부두, 재래부두, 항만장비, 하역장비, 연계운송장비, 피더항만, 굴입식터미널, 자동화터미널, 항만성능평가기술, 항만 물류시설, 내륙운하시설 등

2. 지정대상

| 1. 개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 운영 및 관리

구분	지정대상
도로운영	시설물관리, 신호체계관리, 통행제어, 대중교통 운영관리, 교통류분석 및 시뮬레이션, 교통관리최적화, 전자지불처리,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여행자정보고급화, 대중교통활성화, 화물운송효율화, 교통사고 예방 및 조사 분석, 교통재난 및 인명구호, 도로의 첨단화, 유지관리 효율화 등
철도운영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철도관제시스템, 승차권예약발매시스템, 철도정보유통활성화시스템, 검수정보시스템, 훈련시스템, 면허시스템, 철도산업안전보건시스템, 유지보수/정비시스템 등
항공운영	운행정보, 관제시스템, 급유 및 정비시스템, 통신시스템, 기타항행보조시스템, 훈련 시스템, 감항인증기술, 안전검사 등
항만운영	항만운영시스템, 수문관리시스템, 항만하역시스템, 해상시설물관리, u-port 시스템, RFID 기반 통합항만시스템, 항만운영 평가기술 등

3. 신청자격

| 1. 개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 신청자격

■ 기술개발자

-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보급·활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통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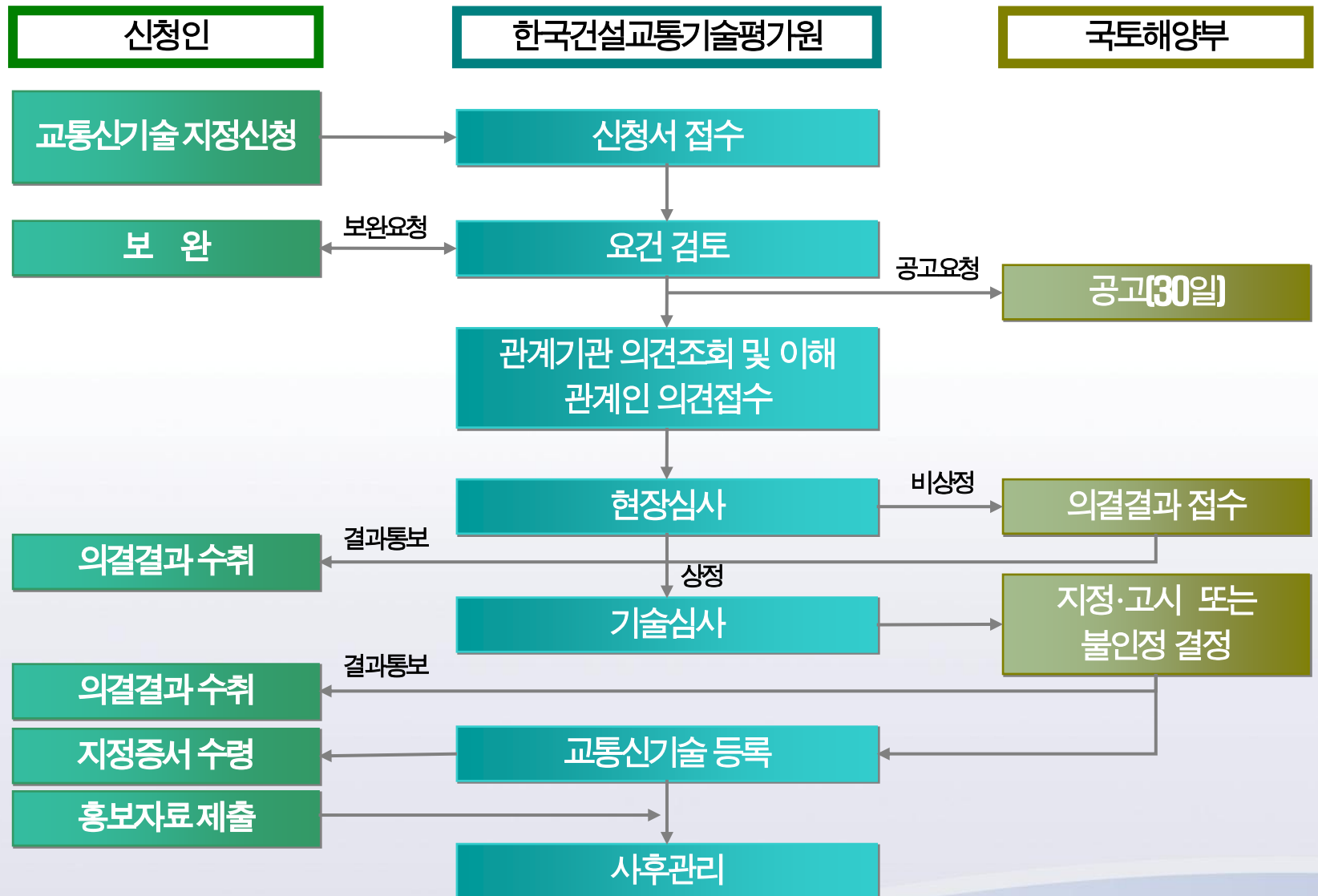
■ 승계인

- 승계란 일반적 의미와 동일하게 매매, 상속 등을 의미
- 기술개발자로부터 권리 전부를 이전 받은 단독권리자와 권리 일부를 이전 받은 공유자 모두를 의미함

※ 교통신기술로 지정을 받을 경우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함

4. 처리절차

| 1. 개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5. 지정혜택

| 1. 개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 기술사용료 청구 가능

■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 활용실적 우수기관 또는 관계자정부 포상

■ 시범사업 우선 적용 및 시험시공 권고

■ 우수 교통신기술의 선정 및 포상 등

■ 자금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 우대(기술평가 항목 중 '기술개발 및 수상실적' 항목을 A등급으로 평가)

- 정부, 공공기관이 조성한 특별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 가능

■ 홍보지원

■ 기술개발보상제도(국가계약법)

- 새로운 기술 공법을 사용한 설계변경으로 절감된 금액의 30%를 감액하여 계약(70%는 설계변경자의 이익으로 함)

5. 지정혜택

| 1. 개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PQ 점수 부여

관련 법규	소관부처	비고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별표2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에 교통신기술 추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반영
한국도로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별표3-1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에 교통신기술 추가	한국도로공사	반영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협의중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협의중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협의중

수익계약: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진행 중

우수제품 선정 우대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교통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수제품 지정대상에 포함

6. 신기술 지정 현황

| 1. 개요 | 2. 지정대상 | 3. 신청자격 | 4. 처리절차 | 5. 지정혜택 | 6. 지정현황 |

1

제1호: 자동차사각지대 해소용 사이드미러기술인
“비구면 다초점기술을 적용하여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차량용 후사경”
(시리스케이)

2

제2호: 자기부상열차나 모노레일의 선로를 전환하는
“거더 굴절형 열차선로 전환장치” (대명엔지니어링)

3

제3호: 고속철도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한
“콘크리트 궤도용 열차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적용되는 2중 탄성체결장치의 강성을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삼표이앤씨)



교통카드인증제도 소개

1. 제도 도입 배경 및 지정대상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3. 인증대상 및 인증신청자
4. 인증절차
5. 적합성 시험
6. 인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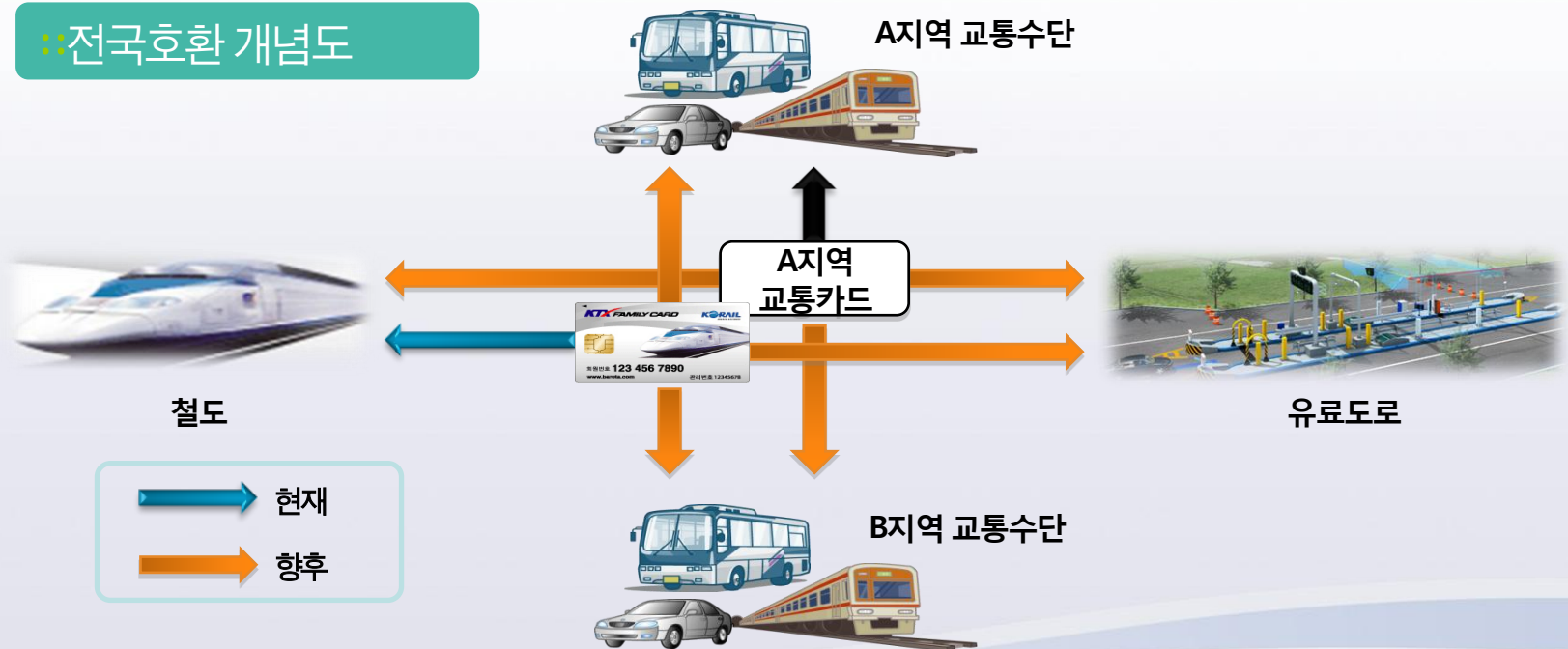
1. 배경 및 목적

| 1. 배경 및 목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인증대상 및 인증신청자 | 4. 인증절차 | 5. 적합성 시험 | 6. 인증현황 |

::도입배경

- 교통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나, 지역·수단·업체별 교통카드간 호환성이 없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
-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보급·설치·운영하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 호환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실효성을 제고 국가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의 자율적 기술개발 유도제도 필요

::전국호환 개념도





2. 근거법령 및 관련기관

| 1. 배경 및 목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인증대상 및 인증신청자 | 4. 인증절차 | 5. 적합성 시험 | 6. 인증현황 |

::근거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7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국토부 고시)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인증수수료(국토부 고시)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국토부 승인)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적합성 시험규정(국토부 승인)

>> 국토해양부

- 인증관련 법규 제·개정
- 인증업무 제도개선
- 인증대행기관 지정·관리
- 인증수수료 고시
- 인증서 발행
- 인증업무지문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

- 인증신청 상담·접수
- 인증시험 수행
- 시험결과 보고
- 인증서 교부
- 인증신청안내 매뉴얼 관리
- 인증시험장비 관리



3. 인증대상 및 인증신청자

| 1. 배경 및 목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인증대상 및 인증신청자 | 4. 인증절차 | 5. 적합성 시험 | 6. 인증현황 |

::인증대상

- 교통카드 :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 (선불교통카드 / 후불교통카드)
- 지불SAM :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불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SAM : SECURE APPLICATION MODULE)



::인증신청자

- 대중교통운영자
- 교통카드사업자(발행사 포함)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개발·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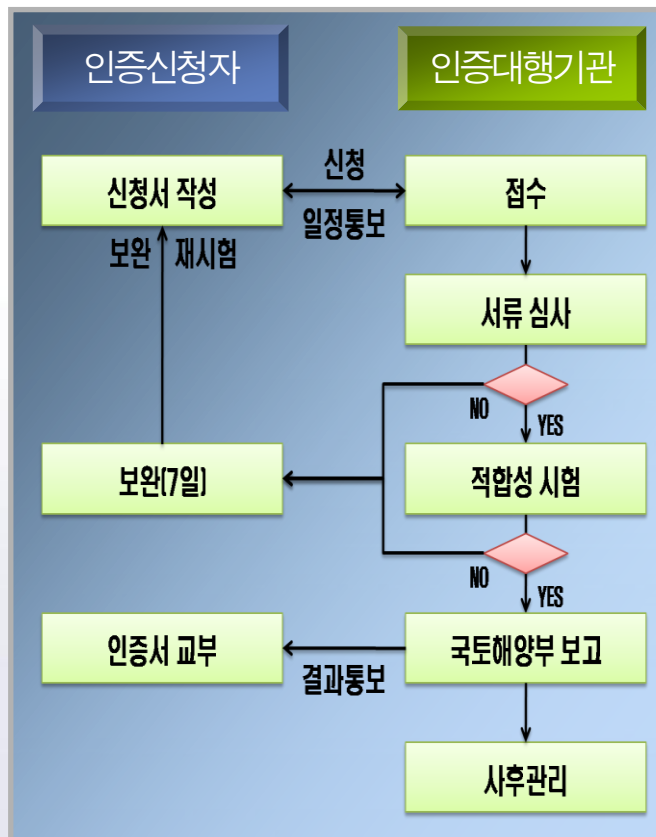




4. 인증절차

| 1. 배경 및 목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인증대상 및 인증신청자 | 4. 인증절차 | 5. 적합성 시험 | 6. 인증현황 |

::인증절차



1. 신청서 접수



2. 서류심사



3. 적합성 시험



4. 인증서발행/교부



3
교통카드
인증제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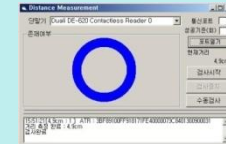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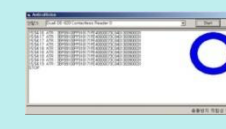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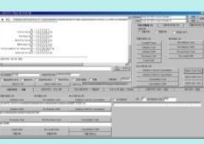


5. 적합성 시험

| 1. 배경 및 목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인증대상 및 인증신청자 | 4. 인증절차 | 5. 적합성 시험 | 6. 인증현황 |

::적합성 시험

- 통신거리: 시료의 통신 거리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
- 충돌방지: 시료의 충돌 방지 기능이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
- 프로토콜: 시료의 프로토콜이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

항목	시험장치	시험수행	시험결과 확인
통신 거리			
충돌 방지			
프로 토콜			



6. 인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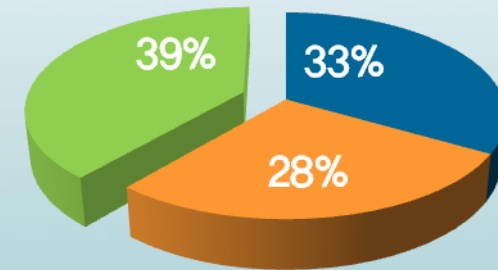
| 1. 배경 및 목적 | 2. 근거 법령 및 관련 기관 | 3. 인증대상 및 인증신청자 | 4. 인증절차 | 5. 적합성 시험 | 6. 인증현황 |

인증번호	인증대상	기관명
제2010-01호	선불교통카드	인포트러스트(주)
제2010-02호	선불교통카드	(주)카드넷
제2010-03호	후불교통카드	케이비테크놀러지(주)
제2010-04호	후불교통카드	유비벨록스(주)
제2010-05호	선불교통카드	유비벨록스(주)
제2010-06호	후불교통카드	유비벨록스(주)
제2010-07호	지불SAM	한국도로공사
제2010-08호	선불교통카드	유페이먼트(주)
제2010-09호	지불SAM	(주)이비카드
제2010-10호	후불교통카드	시큐어플랫폼즈테크놀로지(주)
제2010-11호	지불SAM	(주)한국스마트카드
제2010-12호	선불교통카드	(주)한페이시스
제2010-13호	후불교통카드	(주)한페이시스
제2010-14호	지불SAM	(주)한페이시스
제2010-15호	선불교통카드	(주)코아게이트

인증번호	인증대상	기관명
제2011-1호	지불SAM	유페이먼트(주)
제2011-2호	지불SAM	(주)카드넷
제2011-3호	지불SAM	(주)마이비

::인증현황 (112기준)

- 선불교통카드 6건
- 후불교통카드 5건
- 지불SAM 7건





녹색기술인증제도 소개

1. 개 요
2. 인증종류
3. 인증절차 및 방법
4. 지원혜택
5. 인증현황



1. 개요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도입배경

- 자원 및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 녹색산업의 특성상 시장기능 만으로 충분한 자금유입 기대 곤란
-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목 적

- 녹색기술·사업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민간자금 확보 간접 지원
-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줌으로써 민간 (금융권 등)의 투자 애로 해소 및 자발적 투자 유도

:: 근거법령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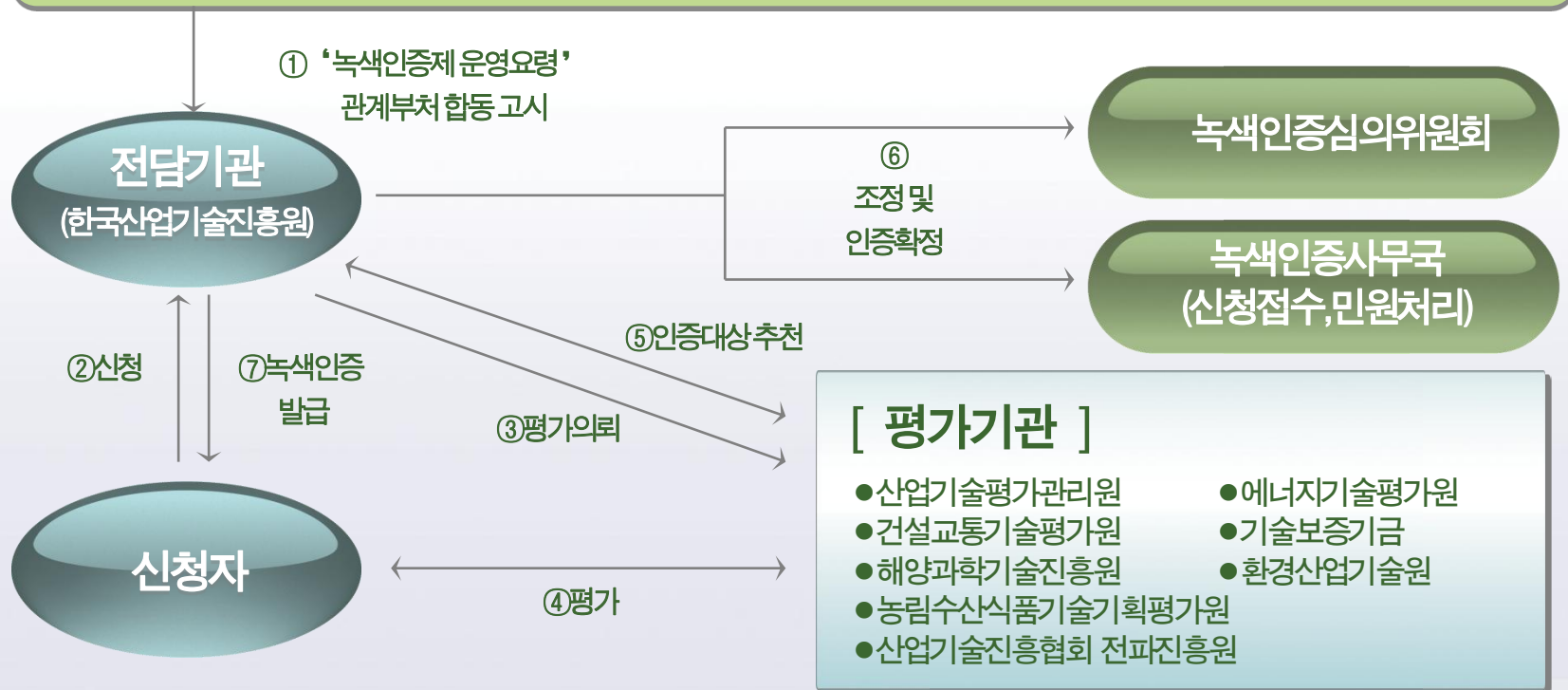


1. 개요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조직 및 체계

지식경제부(총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2. 인증종류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녹색기술인증

-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고려,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10대 분야 유망 녹색기술
(총 10대 분야 61개 중분류 256개 소분류, 1,263개 핵심기술)
※ 국토부 소관 : 첨단그린주택·도시 등 5대분야 190개 핵심(요소)기술

분 야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01. 신재생에너지	7	46	186
02. 탄소저감	3	20	95
03. 첨단수자원	9	32	130
04. 그린it	10	49	273
05. 그린차량	6	13	133
06. 첨단그린주택·도시	4	17	76
07. 신소재	6	22	68
08. 청정생산	3	9	105
09. 친환경농식품	6	20	91
10. 환경보호 및 보전	7	28	106
총계	61	256	1,263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2. 인증종류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녹색사업인증

- 녹색기술·녹색제품을 이용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 (총 9대 분야 95개 사업)

※ 국토부 소관: 첨단 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등 9개 분야 37개 사업

대분류	중분류
01. 신재생에너지 보급 · 확산 사업	12
02.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5
03. 첨단수자원 개발 · 처리 · 관리 사업	10
04. 그린IT 활용 · 보급 사업	9
05. 그린카 · 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 · 확산 사업	10
06. 첨단 그린주택 · 도시 · 기반시설 보급 · 확산 사업	10
07. 청정생산 기반구축 사업	9
08.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 공급 사업	8
09.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22
총계	95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2. 인증종류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녹색전문기업 확인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 년도 매출비중이 업체 **총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 신청요건

녹색기술

- 신청하는 기술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될 것
-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녹색사업

- 신청하는 사업이 녹색사업 인증대상에 해당
-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받은 자도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녹색전문기업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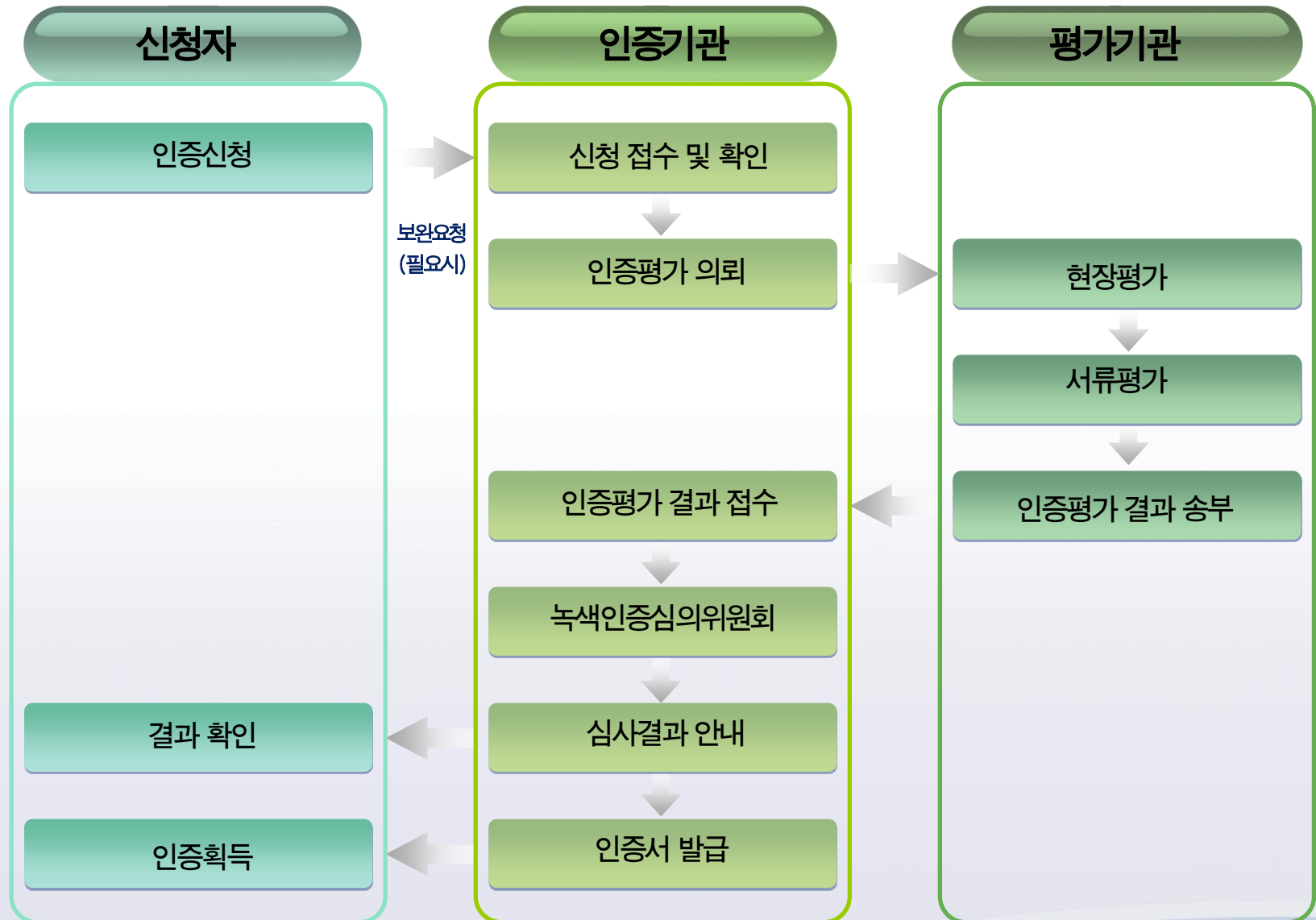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3. 인증절차 및 방법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3. 인증절차 및 방법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현장평가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가 현장평가 수행

녹색기술

- 신청기술 실제 보유여부 및 활용방법
- 신청기술 적용 제품 생산여부
- 사업화기반 보유 등

녹색사업

- 신청사업 수행여부 및 진행사항
- 신청사업의 녹색기술 활용여부
- 환경기대효과 등

:: 서류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사업) 관련분야의 전문가 7인 이상

>> 인증대상 여부 및 기술수준 적합여부 판단

※ 신청자의 발표(필요시) 수행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3. 인증절차 및 방법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녹색기술

- 평가항목
: 기술성, 녹색성, 시장성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기술수준 : 반드시 충족

녹색사업

- 평가항목
: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기대효과, 사업타당성
- 사업의 녹색성 위주로 평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공공 인프라 성격의 프로젝트
: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 생략
(70점 만점에 50점 이상)

녹색전문기업 확인

- 1년 이상된 기업
-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
액의 30% 이상인 기업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다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포함)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3. 인증절차 및 방법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인 증

- 평가기관에서 평가결과 송부 후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여부 확정
-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 산-학-연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
- 녹색인증사무국은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과 안내
-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여부 확정(보완기간 제외)

인증서 확인서 발급

-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명의로 발급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국토부)
- 유효기간 : 2년
-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녹색인증사무국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연장신청은 인증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4. 지원혜택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4대분야 26개 지원 혜택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융자 지원
- 중기정책자금 연계
- 기술보증중점지원
- 수출금융 보험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 정부발주공사우대
- 공공구매 국방조달우대
- TV라디오광고료 일부 면제
-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녹색기술사업화 기반조성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 해외/고급인력 도입
-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 국가녹색기술대상 우대

사업화추진 시스템구축

- R&D 참여시 우대
- 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
- 녹색기술이전 투자유치
- 글로벌사업화컨설팅
- 국제컨퍼런스개최

:: 녹색금융상품 (민간투자자) 세제혜택

- 녹색인증사업 또는 녹색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구분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4. 지원혜택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지원 과제	주요 혜택	세부 내용
산업별 보급융자 참여 우대	관계부처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 우대	(예) 신재생에너지보급-지경부 :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점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예외규정 적용	융자한도 제한 없음
기술보증 중점지원	녹색인증기업 중점지원 대상에 포함 기술평가 일부 면제	보증한도 : 30→70억원 부분보증 : 85%→90% 보증료율 : 0.5% 감면 추가보증 : 3억원
수출금융 보험지원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우대 - 거래이행능력평가 가점부여	대출한도 : 20→30억원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부분보증 : 95→100% 보험료 : 20%할인 연속수출기간 : 30→60일 보험/보증한도 : 책정한도 2배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4. 지원혜택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판로-마케팅 지원

지원 과제	주요 혜택	세부 내용
정부발주공사 우대	공공공사/ 정부입찰시 평가가점 경제적 부담 완화로 공공시장 진입 촉진	신인도 평가 가점부여 의무선금 지급율 : 30~50% → 40~60% 일찰, 계약보증금 감면지원
공공구매/국방조달 심사 우대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 가점 부여	조달청 : 계약이행능력심사 가점 1.5점 국방부 : 계약이행능력심사 가점 0.5점
조달청 우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반영(10.12)	1차 심사 면제(제8조의3)
TV · 라디오 광고료 일부 면제	지상파 및 DMB TV · 라디오 광고지원	지상파 : 광고료 70% 할인 DMB : 방송횟수 200% 적용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KOTRA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지원 사업과 연계	(예) KOTRA : 해외전시회 참가 우대(가점 10점)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4. 지원혜택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기술사업화기반 조성

지원 과제	주요 혜택	세부 내용
병역특례 지정업체 추천	교과부장관의 병력특례지정업체 추천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는 가점 부여	선정가점 : 검토중 벤처, 이노비즈(가점 5점)과 동등 혹은 상향우대 검토
해외/고급인력 도입 및 파견	-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중기청 -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신청시 가점	선정가점 : 5점 1인당 1~2천만원 지원 - 업체당 4인 - 고용기간 3년(최대 5년)
	출연연 석박사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선정가점 : 검토중
녹색기술 성능검사 비용 지원	- 녹색기술인증 취득중소기업의 - 신규 시험평가비용 50% 환급	소요재원 : 연간 3억원
국가녹색기술대상 우대	「국가녹색기술대상」 참여시 - 서류평가 가점부여	평가가점 : 2점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4. 지원혜택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지원 과제	주요 혜택	세부 내용
국가 R&D 참여우대 (각부처)	• 지경부등 관계부처 R&D사업 • 참여시 가점부여 및 수수료 지원	(예) 국토부 : 건설기술혁신 등 9개 사업
특허우선심사 국제출원 지원	• 특허 우선심사대상 포함	
	• 국제출원비용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선정가점 : 5점 1인 5건, 700만원/건
녹색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 기술공급자,수요자,기술거래기관 등 •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국내 : 수시 해외 : 지역별 GCC ⁽¹⁾ , EEN ⁽²⁾ 연계
글로벌사업화컨설팅	• 주요국 사업화 컨설팅 지원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를 통한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 GGGI⁽³⁾ 「녹색성장 국제컨퍼런스」 연계 “녹색인증기업 Session” 개최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4. 지원혜택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녹색인증기업의 코스닥 상장 지원 제도 (기술평가제도)

- 녹색인증기업 상장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 확대 (11.03.07)

구 분	현 행	개 선
기술평가대상	바이오업종 벤처기업	녹색인증 등을 취득한 신성장동력기업(17개 업종)

:: 전문평가기관 확대

- 에너지·환경·방송 등 다양한 신성장동력분야의 기술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 추가 지정 필요
- 녹색기술평가에 특화된 녹색인증 평가기관(9개) 중 전문인력 및 기술평가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선정

현 행(7사)	추가 선정(4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4. 지원혜택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현행

- 복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취득

:: 개선

- 녹색인증기업인 경우, 비녹색인증 기업인 경우로 구분

[기술평가부담 완화]		
구분	현행	개선
기술평가 등급요건	복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취득	• 녹색인증기업 -> 단순평가 • (A등급 취득) • 평가비용 절감
		• 비녹색인증기업 -> 복수평가 • (복수평가중 1곳이라도 A등급) ※최소 BBB 등급 이상

:: 평가비용

- 신청기업 부담(평가기관당 1,000만원)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4. 지원혜택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코스닥시장 상장의 장점

세제상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자금조달능력 증대

- 신규 상장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후 공모증자 용이

기업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 경영실적, 주가 등의 기업정보가 TV, 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
- 홍보를 통한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
-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 투자시 신용도 제고에 유리

기타

-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 주식배당한도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3)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4. 지원혜택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하고자 하는 신성장동력기업

-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이면 신성장동력기업으로 상장특례 적용

[코스닥시장상장 특례]

요건	설립년수	자기자본	경상이익	이익규모, 매출액, 시가총액(택일)
일반기업	3년이상	30억원이상	적용	① ROE 10% ② 당기순이익 20억 ③ 매출액 100억&시가총액 300억
벤처기업	면제	15억원이상	적용	① ROE 5% ② 당기순이익 10억 ③ 매출액 50억&시가총액 300억
신성장동력기업	면제	15억원이상	면제	면제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5. 인증현황

| 1. 개요 | 2. 인증종류 | 3. 인증절차 및 방법 | 4. 지원혜택 | 5. 인증현황 |

(2011. 03. 기준)

구 분	신 청	인 증	부적합	반 려	평가중
녹색기술 인증	51	13	10	19	9
녹색사업 인증	3	0	0	0	0
녹색전문기업 확인	5	3	0	2	0
계	59	16	10	24	9

4
녹색 인증제도
소개

감사합니다